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또한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해당 법안에 대해 신속히 입법이 추진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최근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가(이하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¹⁾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²⁾의 지위에서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하거나(보험업법 제102조의2 위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 모두 업무정지, 등록취소 대상이 됨
 -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인지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금융위원회의 청문 및 제재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동안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사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음³⁾
 - 이에, 보험사기 형사처벌 관련 일정 사유를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특히 보험설계사 등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4. 8. 12. 발의되었음(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14호)
 - 이하에서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겠음

1)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제88조 제2항,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제90조 제2항에서 규정함. 또한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라 제86조가 준용됨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
 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3. 5)

○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 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등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보험업법과 금소법 외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함)를 추가함으로써, ①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②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 보험업법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이 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행할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음
 - 한편 보험설계사 등이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⁵⁾
- 또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⁶⁾
- 개정안은 보험업법과 금소법 외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함)를 추가함으로써,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⁷⁾

4)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87조 제2항 제1호, 제89조 제2항 제1호

5)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인 것에 반하여(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보험설계사 등이 제84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이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6) 보험업법 제87조의2 제1항 제4호, 제89조의2 제1항 제4호

7) 참고로 보험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즉,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금융관계법령’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포함되는 것임(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5호의 2). 과거에는 금융관계법령의 범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4. 6. 18.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포함되었음

○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함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임⁸⁾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함⁹⁾
 -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 처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음¹⁰⁾
 -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여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절차가 불필요할 수 있는 것임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이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등록 당시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했음이 밝혀진 경우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
 - 즉, 보험설계사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입법이 진행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는데(박수영 의원안,

8) 행정안전부(2022. 7),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9)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10)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의안번호 제2120049호 및 황운하 의원안, 의안번호 제2117889호),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임

-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신속한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이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램